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계약번호 (2022-주세종A 041259)

결 재	담 당	대표/현장소장

1. 사업장 개요

사업장 관리번호	609-81 35277-6	사업장 개시번호	922-04 30902-1	회사명	(주)에스에트에이
현장명	문양3LIF FOSB CV STK 물류시스템 7P2000 ASLCV			고용부 관할지청	천안지청
주소	충남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158			시스템비계	없음
공사종류	일반건설공사(을)		공사금액	2,305,000,000원	
발주자	삼성전자(주)		공사기간	2022.05.23 ~ 2022.09.30	
기술지도 대가 (총액)	2,200,000 원		기술지도 대가 (회당)	275,000 원	
공사 주요공정(전체) / (금일작업) : FRT CV 기구관장제어설치, LBS 기구관장					
⇒ ① 기구시설 철거 반출 ⇒ ② 가래반영/소통반 ⇒ ③ 기구 설치 조립					
⇒ ④ 케이블배선, 관장 ⇒ ⑤ 가동제어, test ⇒ ⑥ 시운전, 영상					

* 삼성전과 내 현장 사진촬영금지

2. 기술지도 개요

구분	①(건설) 전기, 정보통신	현장 책임자	책임자명 : 김민 (서명) 연락처 : 010-7291-3754
재해예방기관	(주)세종재해예방기술원	점검자	김미경 (서명)
기술지도 횟수	총 (8)회 중 (2)회	기술지도 방문일시	2022년 6월 20일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16,000,000원	사용된 안전관리비	500,000원
공정률	(13) %	방문 시 근로자수	12명
투입 기계장비	없음		

※ 기술지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기술지도 방문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CU 기구전강 제어석거	·작업중 기구 크레임 계명 철락	1) 관리감독자 배치함 2) 안전감시와 배치함 3)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관계근로자는 작업중 휴식은 금지 4) 작업 2인 1조 작업 진행 → 이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지 안전조치후 작업재개	
	·상하 동시 작업시 리대 승구등의 낙하	1) 상·하 동시 작업금지 2) 관계자와의 휴먼근리근리 3) 관계근로자는 작업시간 종료후 철거	
	·말비제사등 작업시 추락 전도	1) 절고하게 제작한 기성품 사용함. 2) 말비제 양끝부분 디딤작업금지 → 디딤 반리현상 설치함 3) 지극복재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보수복재 설치함 4) 안전타 안전모 착용함	

4. 다음 방문 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공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기중 시선 철거· 반출시	·작업중서 미흡수로 지대등의 낙하 전도	1) 작업전 작업계획서 작성 2) 관리감독자, 안전감시와 배치 3) 작업중 휴식 금지, 적체등을 작업중 해당근로자에 금지, 안전교육 실시 4) 안전타, 안전모 착용	
	·말비제 사용시 추락 전도	5) 말비제 양끝부분 디딤작업금지 6) 작업중이에 맞는 장소에 말비제 설치하여 사용 작업거리가 약간 먼 경우 두리한 작업금지	

5. 사업장 지원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기술자료배포(1건)	산업안전보건법령모집	

6. 지난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적사항	이행 여부	비고
기구권장설치시 크의	이행함.	

7. 산업재해 발생 유무(✓)

기간	유 (재해 내용)	무
~	전 산업재해 없음	✓

※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미제출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8. 법정장비 사용

장비명	측정대상	사용위치	측정값	개선사항
		측정장비 없음		

※ 조도 75Lux이상 작업 및 통로 / 절연저항 0.2M이상 / 접지저항 100Ω이하 / 산소농도 18%이상 23.5%미만 / 황화수소 10ppm미만 / 일산화탄소 30ppm미만

9. 참조사항

- 공사기간 연장시 기술지도계약(변경) 및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실시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총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토목 150억미만)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총 공사금액 20억이상시 선임후 3개월이내 이수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신청(인터넷 직무교육센터) : <http://www.dutycenter.net>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10. 산업안전보건법 일반사항 안내자료

관리적 사항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선임 및 직무교육 이수 ① 대상 :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② 직무교육 : 신규교육-선임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6시간 이수, 보수교육-매2년 전,후 3개월내(총6개월) 6시간 이수 ※ 2시간 온라인 후 4시간 집체교육 또는 6시간 집체교육	선임 교육이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지정 및 작업지휘자 배치 철저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개최 - 구성 : 도급인의 사업주 및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기록,보존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점검반 편성(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정성, 사용내역서 비치, 목적외 사용금지 - 매월 사용된 금액은 사용내역서에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현장에 비치 및 목적외 사용 금지	" (① 계상 적정성, ② 사용내역서, ③ 사용금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① 대상 : 신규로 투입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공종을 바꾸어 새로운 공종에 투입되는 근로자 ② 교육시간 : 작업공종에 투입 전 8시간이상 실시 /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된 근로자 2시간 이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② 교육시간 : 4시간 ③ 위반시 처분 : 1인당 5만원 과태료	" (→ 10만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자 정기교육 ① 근로자 : 당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6시간이상 ② 관리감독자 : 년16시간이상 실시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별교육 : 다음의 위험공종 투입전 2시간 이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지반굴착작업 ○ 허락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용접작업 ○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LPG, 수소가스등 인화성, 폭발성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맨홀작업 ○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 밀폐공간작업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 석면해체, 제거작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27종) 운전자 16시간 이상 (단,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철저	지정
<input type="checkbox"/>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X
<input checked="" type="checkbox"/> MSDS 작성 및 관리 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후 비치 및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재 ② 경고표지 설치 및 사용전 위험성, 취급방법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실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위험성 평가 실시 ※ 사업주는 다음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input type="checkbox"/>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
<input type="checkbox"/>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input type="checkbox"/> 흙막이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input type="checkbox"/>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input type="checkbox"/> 2m이상 지반굴착 작업계획서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방법, 필요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을 이설·보호대책, 사업장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
<input type="checkbox"/>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계획서 작성 비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계획서)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작업도구·장비·시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지지방법) 관할 지방노동관서 전담감독관에게 유선통보 (작업전날 16:00 까지 유선통보)	"
<input type="checkbox"/> 건물 등의 해체 작업계획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내 연락 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